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약제비 추가 지원〉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99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약제비 추가 지원	3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9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짐.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

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Ⅱ. 검토 의견

1.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약제비 추가 지원

□ 개정안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 ① (생략)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난임치료를 위한 <u>시술비</u>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 <u>시술비·검사비·약제비</u> 등-----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¹⁾ 및 약제비²⁾ 지원을 현행 시술비 지원과 함께 난임극복 지원 대상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면, 난임

1) 예컨대 초음파 촬영, 호르몬 검사, 혈액 검사 등임.

2) 예컨대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등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다만, 난임극복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³⁾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비와 약제비의 종류 및 범위가 방대하여 세부 지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하여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참고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난임진단 검사비 및 난임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현황(예시) >

(2025. 8. 기준)

지역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상남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경상도 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진단 검진비 부부합산 최대 20만원 지원(1회) (기초혈액검사 등 8종)
전라북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난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1회)
전라남도 광양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난임 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20만원 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부부합산 최대 30만원 지원(1회)
전라남도 순천시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부부합산 최대 20만원 지원(1회)
전라남도 화순군	난임부부지원사업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2024년 이후 최초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3) 참고로 각 지자체에서 현행법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 규모가 2021년 673억 3,198만원, 2022년 892억 7,621만원, 2023년 1,058억 8,231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정형진 기자, '난임 시술비 지자체 지원 1,000억원 돌파...1위 지자체는 어디?', 아시아경제, 2024.10.27. 중에서 인용).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의 수는 각 연도별로 22만명에서 25만명에 이르고 있음.

< 최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난임진단자 현황 >

(단위: 년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27,867	228,618	250,262	240,965	241,942
여성	148,285	149,442	161,323	155,041	153,889
남성	79,582	79,176	88,939	85,924	88,05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N46(남성불임), N97(여성불임)⁴⁾으로 주상
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 기준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 약제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별도의 법률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므로 검사비와 약제비의 추가적인 지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개별적·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임.

문 의 처

02)6788-5498

4) 의학적 용어로는 불임(infertility)이나, 진료기록 등에서는 난임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드임.